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2회 임시회(2022. 1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2-08
----------	-------

2022. 1. 24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안전과)
- 나. 제 출 일 : 2022. 1. 7.
- 다. 회 부 일 : 2022. 1. 10.

### 2. 제출이유

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활성화  
화를 위해 마포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 
규정하고자 제출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보안관 운영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.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안전보안관 구성과 대표, 부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과 임기 및 활동에 관한  
사항(안 제3조~ 제5조)
- 다.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안전보안관 위·해촉 현황 관리와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안전보안관 우수 활동자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1. 12. 16.~ 2021. 12. 30.(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자율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지역 안전위험요소의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구(舊)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2018년 행정안전부가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 보안관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8개,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, 안 제3조는 ‘안전보안관’ 구성의 위촉 자격사항과 대표 및 부대표 선임의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
- 안 제4조 및 안 제 5조는 ‘안전보안관’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소정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그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,
- 안 제6조는 예산 범위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활동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위·해촉 관리와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8조

는 ‘안전보안관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에 따라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단체 위임사무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마포구는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인을 예방순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‘우리동네 안전감시단’을 2015년 4월부터 운영하였음. 이 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‘안전무시관행 공익신고 활성화’를 위한 안전보안관’ 운영 추진에 따라 2021년 기준 49명을 운영하고 있음.
-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 되어 ‘중대시민재해’ 예방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이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근거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한 위임 사무이므로 자치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조례목적에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는 점과 안전보안관 활동 소요 경비<sup>1)</sup>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체재원과 위임기관의 부담금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나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소요에 대해 구차원의 재원(財源)<sup>2)</sup> 마련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겠음.

1) 활동비 : 3만원(1인/월, 4시간 기준), 간담회비 : 1만원(1인/월)  
활동용품 : 조끼, 모자, 방한용품 등

2) 사업비 : 22,050천원(21년 기준, 전액시비)

# 안전보안관 활동(예시)

## 1. 안전위험 신고사례

분 야	신고내용 예시
① 도로, 교량	·00교의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어 주행시 소음이 크며 차량손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음.
② 공사장	·00초교 인근 00B/D공사현장의 안전보호망이 찢어져 있어 공사장 인부 및 보행자의 안전에 취약해 보임.
③ 위험 건축물	·00B/D의 노후화로 외벽의 벽돌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안전에 취약해 보임.
④ 풍수해, 산사태	·00산 초입의 00식당 옆 옹벽상단에 폭우로 인하여 토양유실이 발생하였음. 이에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⑤ 제설, 한파, 폭염	·00빌딩 옥상부분에 맺혀있는 고드름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음.
⑥ 우범지역 환경 등	·00동에 빈집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무너질 우려도 있어 안전웬스 등 대책이 필요함.
⑦ 여성, 어린이 안전 등	·00동00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낮시간대에도 다니기 무서움.
⑧ 기타 도시시설물	·00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포장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, 놀이기구가 날카롭게 부서져 있어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.

## 2. 예찰활동 사례 중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

분 야	발생빈도가 높은 유형
① 보도시설	·보도블럭 융기 및 침하, 가로수분 융기 및 파손,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파손, 점자블럭시공 불량, 옥외 소화전이 보도 중앙에 위치, 보도담장 기울어짐
② 차도시설	·도로방음벽 파손, 아스팔트포장 융기 및 침하, 횡단보도 라인마킹 불량, 횡단보도 라인마킹 미설치, 보도가 없는 4차선 도로, 덧포장공사구간 장기 방치 등
③ 배수시설	·배수맨홀주변 균열·침하 및 탈락, 빗물받이 뚜껑 파손 및 주변 침하
④ 교통시설	·사고위험이 높은 U턴 구간이전, 신호등체계 개선, 불법주차 단속, 교통안내표지판 불량(기울어짐, 역방향설치, 파손, 노후화로 시인성 불량), 신호등 없는 4차선 횡단보도, 중앙선침범 불법 좌회전구간에 교통안전방지시설 미설치
⑤ 전기시설	·전신주 상부에 위치한 새둥지, 가로등 파손 및 미점등, 전선 설치불량(늘어짐, 절연불량 등), 가로등분전반 뚜껑 분실 등
⑥ 건설현장 안전시설	·굴착구간 안전펜스 미설치, 고소작업 안전난간 미설치,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
⑦ 기타	·공원 및 학교내 농구대 충돌완화장치 미설치, 지하철 환기구의 과다한 보도 점유, 콘크리트옹벽의 균열 및 표면탈락, 석축붕괴구간 장기 방치 등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<약칭 : 재난안전법>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